

부속서 II-나
말레이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목록은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신규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을 규정한다.

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5조(최혜국 대우)

라. 제8.6조(현지주재)

마. 제11.10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1.11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지칭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2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마. 기준조치는 명시된 경우,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조치의 비열거적 목록을 적시한다.
3.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2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그리고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관련한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이 목록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그러한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개정으로 인한 차등적인 대우의 유보 범위에 관한 언어의 부재는 그 유보 범위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해석을 저해하지 않는다.
5. 이 목록의 목적상, “CPC”는, 참고된 경우, 잠정 중앙품목분류 (통계문서 시리즈 M, No.77, 국제경제사회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 따라 비합치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개별 CPC 코드에 대한 “**”의 사용은 그 코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그 코드의 대상이 되는 전체 서비스 범위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칭한다.
6. 한국의 유보목록은 이 협정의 제8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1장(투자) 또는 다른 장들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해석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 및 체류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9-가(구체적 약속)에 규정된다.

1	분야	:	토지 및 부동산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에 의한 토지 취득이나 거래 또는 토지상의 활동은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p>
	기존조치	:	<p>연방 헌법</p> <p>1960년 토지취득법[법 제486호]</p> <p>1960년 토지보전법[법 제385호]</p> <p>국가토지법[법 제828호]</p> <p>1957년 연방토지위원회법(1988년 개정)[법 제349호]</p> <p>1963년 국가토지법(페낭 및 말라카 소유권)[법 제518호]</p> <p>1985년 스트라타 소유권법[법 제318호]</p> <p>2013년 스트라타 관리법[법 제757호]</p> <p>1960년 토지(집단정착구역)법[법 제530호]</p> <p>1933년 말레이 보호구역법[F.M.S. 제142장]</p> <p>1930년 말레이 보호구역법[입법 제29호]</p> <p>1930년 켈란탄 말레이 보호구역법[1930년 제18호]</p> <p>1955년 켈란탄 토지정착법(1991년 개정)[법 제460호]</p> <p>1353년 보호구역법[1353년 제7호]</p> <p>1966년 펠리스 토지정착법[1966년 제16호]</p> <p>1936년 조호르 말레이 보호구역법[1936년 제1호]</p> <p>1360년 테렝가누 말레이 보호구역법[1360년 제17호]</p>

	<p>1356년 테렝가누 정착법[1356년 제65호]</p> <p>말레이 보호구역 (셀랑고르)(개정)법 제15/1961호</p> <p>말레이 보호구역(셀랑고르)(개정)법 제7/1985호</p> <p>1926년 관습적 토지법[제215장]</p> <p>1960년 관습적 거주권(렝콘간 토지)법[1960년 제4호]</p> <p>1949년 램바우 운당(토지)법[1949년 제2호]</p> <p>토지 법령[사바 제68장]</p> <p>사바 토지 취득 법령[사바 제69장]</p> <p>1958년 사라왁 토지법[제81장]</p> <p>1992년 과항 토지 규칙</p> <p>1966년 폐라크 토지 규칙</p> <p>2021년 폐낭 토지 규칙</p> <p>케다 법 제63호(말레이 보호구역)</p> <p>1935년 폐를리스 말레이 보호구역법</p> <p>2003년 셀랑고르 토지 규칙</p> <p>사바 토지 법령[사바 제68장]</p> <p>1958년 사라왁 토지법[사라왁 제81장]</p> <p>1966년 말라카 토지 규칙[M.P.U 제3/1966장]</p> <p>2002년 네그리 샘비란 토지 규칙</p> <p>2016년 네그리 샘비란 스트라타 소유권 규칙</p> <p>1990년 토지(집단정착지역) 규칙 – 느그리 셈빌란</p> <p>1934년 조호르 토지 법</p> <p>1976년 지역정부법[법 제171호]</p> <p>1976년 도농계획법[법 제172호]</p> <p>주택개발(규제 및 면허)법[법 제118호]</p> <p>1982년 연방영역(계획)법[법 제267호]</p> <p>1960년 연방수도법[법 제190호]</p> <p>1974년 거리 · 배수 · 건물법[법 제133호]</p> <p>2007년 건물 및 공용재산(유지 및 관리)법[법 제663호]</p> <p>행정 지침</p>
--	---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민간 분야로 완전 또는 부분 이양</p> <p>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법인에 대한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그리고</p> <p>다. 정부 소유 실체 또는 자산의 민영화</p> <p>위의 유보내용은 그러한 지분의 최초 이전 또는 처분, 그리고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 Plan)을 통해 발표된 전략적 분야에 해당하는 후속 이전 또는 처분에만 적용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가 기존 공기업의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이전은 최초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존 공기업의 지분 이전 또는 처분이 부분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는 각 단계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p>
	기준조치	:	1957년 재무부장관(법인설립)법[법 제375호]

민영화 종합추진계획

민영화 지침

2016년 회사법 [법 제777호]

부르사 상장 요건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개발 및 사회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미뿌뜨라, 부미뿌뜨라 지위의 회사, 신탁회사 및 기관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p>연방 헌법</p> <p>정책 및 장관 성명</p> <p>재무부 지시</p> <p>재무부 회람</p> <p>1954년 원주민법[법 제134호]</p> <p>신경제정책(NEP)</p>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국가 및 주 단위형 투자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5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석유 및 가스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페트롤리엄 나시오날 베르핫(페트로나스)과 그 승계기관에는 말레이시아의 육상이나 근해의 여부에 관계없이 석유의 탐사, 채굴, 획득 및 확보에 대해 전적인 소유권과 취소불능하고 배타적인 권리, 권한, 자유 및 특권이 부여된다.</p> <p>페트로나스와 그 승계기관은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 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1974년 석유개발법[법 제144호]</p> <p>그 밖의 이행 조치</p>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¹</p> <p>말레이시아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아세안 회원국에게 참여가 개방된, 아세안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아래에 열거된 분야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에 권리, 우대 및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공 사안 나. 해양 및 항만 사안 다. 방송 사안 라. 우주 운송 사안 마. 수산업 사안, 그리고 바. 디지털 무역 사안
	기존조치	:	-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최혜국 대우(제8.4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u> 말레이시아 내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나 이익을 제한하는 기준 또는 미래 정책에 있어서 조치의 자유화는 외국 법인과 그 본국이 제공하는 능력과 시설이 말레이시아의 구체적인 개발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에 대하여 특혜적이고 차등화된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 목적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외국인 참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비합치 조치는 모든 국가에 무기한 적용된다.
	기준조치	:	-

8	분야	:	폭발물, 무기, 탄약뿐만 아니라 군 관련 장비 또는 장치 및 유사 제품의 제조, 조립, 마케팅 및 유통
	하위 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무기 및 폭발물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1975년 산업조정법 [법 제156호] 1957년 폭발물법 [법 제207호] 1960년 무기법 [법 제206호] 전략적 무역법 [법 제708호]

9	분야	:	장비의 제조, 공급 및 공급자, 도박 서비스의 도소매를 포함하는 게임, 베팅 및 도박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장비의 제조, 공급 및 공급자, 도박 서비스의 도소매를 포함하는 게임, 베팅 및 도박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이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로 우연에 의한 게임 또는 우연과 기술이 결합된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박기기의 이용 또는 운영을 포함한다.
	기준조치	:	1952년 복권법[법 제288호] 1953년 일반게임장법[법 제289호] 1967년 풀베팅법 (2018년 개정)[법 제809호] 1953년 베팅법[법 제495호] 1961년 경주(토탈리제이터 위원회)법[법 제494호] 1965년 경주클럽(대중 스테이크 경마)법[법 제404호] 2017년 세관(수입 금지)명령[P.U. (A) 제103/2017호] 1975년 산업조정법[법 제156호]

10	분야	: 다음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자력 연료 주기를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 나. 전력 발전과 연료 주기 다. 화석 연료 또는 물질 기반의 전력발전소
	하위 분야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p>말레이시아는 다음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자력 연료 주기를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 나. 전력 발전과 연료 주기 다. 화석연료 또는 재료 기반의 발전소
	기존조치	: 1984년 원자력 허가법 [법 제304호] 1990년 전기공급법 [법 제447호] 2024년 전기공급법 (사바) 사라왁 전기공급법

11	분야	:	문화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다음의 제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수입, 출판 및 유통된 후 이들이 자국의 품위 기준에 합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예술 품 및 영화, 그리고</p> <p>나. 텔레비전, 케이블과 위성 방송 혜가를 받은 프로그램</p> <p>이에 더하여, 외국인 예술가 또는 촬영팀에 의한 예술, 공연 또는 촬영도 사전 승인이 요구되며 그러한 활동은 외국인 예술가에 의한 외국 촬영 및 공연 신청을 위한 중앙 기관(PUSPAL) 지침을 준수한다.</p> <p>말레이시아는 미래의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부여하는 차등 대우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²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이란 다음의 행위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p>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p>가.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인쇄나 전자 신문의 출판, 배급 또는 판매. 단, 위의 어느 하나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 한다.</p> <p>나. 영화 또는 비디오 기록물의 제작, 배급, 판매 또는 전시</p> <p>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기록물의 제작, 배급, 판매 또는 전시</p> <p>라. 인쇄 악보 또는 기계 판독 가능 악보의 제작, 배급 또는 판매, 또는</p> <p>마. 일반 대중을 겨냥한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램 서비스 및 방송 네트워크</p>
기준조치	<p>:</p> <p>1984년 인쇄출판법 [법 제301호]</p> <p>1981년 말레이시아 국가영화발전공사법 [법 제244호]</p> <p>1979년 말레이시아 수공예진흥공사법 [법 제222호]</p> <p>2002년 영화검열법 [법 제620호]</p> <p>2010년 국가창조산업정책(DIKN)</p> <p>외국인 예술가에 의한 촬영 및 공연 신청을 위한 중앙 기관 위원회(PUSPAL) 지침</p>

12	분야	:	제조, 도매 및 유통 서비스 ³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 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다음의 제조 도매 및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p>가. 쌀</p> <p>나. 설탕</p> <p>다. 밀가루</p> <p>라. 주류 및 알코올 음료</p> <p>마. 담배, 제조된 담배 대용물 및 전자담배, 유사한 기기 또는 장치, 그리고 전자담배, 유사한 기기 또는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및 액상을 포함하는 궐련 제품</p> <p>바. 직물</p> <p>사. 유리 및 유리제품</p> <p>아. 바이오디젤</p> <p>자. 발전용 기계류 및 특정 산업용 기계류를 포함하는 기계류 및 기기류 또는 그 일부</p> <p>차. 비금속(卑金屬) 및 비금속 산업 물품 또는 제품 그리고</p> <p>카.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p>
	기준조치	:	1976년 소비세법[법 제176호]

³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38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1990년 관세자유지역법 [법 제438호]

1975년 산업조정법 [법 제156호]

정책 및 장관 성명

13	분야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⁴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유해성 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처분과 하수 부산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제품의 생산, 마케팅, 공급 및 유통과 슬러지 처리, 전체적 폐수 관리(침전물, 유출수 포함), 무역 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유기 및 비유기), 물 재활용 및 자원 회수를 포함하는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1974년 환경품질법 [법 제127호] 2006년 물서비스산업법 [법 제655호] 2017-2030년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종합추진계획

⁴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38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14	분야	:	항공 운송 서비스 ⁵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고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라.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리스 마. 승무원을 동반하는 항공기 리스 바. 항공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사. 화물 취급 아. 항공기 케이터링 서비스 자. 재급유 서비스 차. 항공기 운항 정비 카. 램프 핸들링 타. 수하물 취급 파. 여객 대응, 그리고 하. 항공을 통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빈도와 경로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

⁵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38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기준조치	:	행정 지침
------	---	-------

15	분야	: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을 포함하는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도심 및 교외 정기 운송, 철도, 택시 서비스를 포함하는 여객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그리고 버스, 택시 및 철도 정거장 서비스 및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전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

16	분야	:	중재 및 샤리아법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중재 및 샤리아법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

17	분야	: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득 보장 또는 보험 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다. 사회복지 라. 공공 교육 마. 공공 훈련 바. 보건, 그리고 사. 보육
	기존조치	:	-

18	분야	:	수의료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승마장 또는 경마장의 마속(馬屬) 동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수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1974년 수의사법[법 제147호]</p> <p>행정 지침</p>

19	분야	: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⁶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합 보건 서비스 나. 병리학 실험실 다. 치과 진료소 라. 일반 치과 진료의 마. 일반 진료의 바. 조산원을 포함하는 일반 간호사 사. 의료 진료소 아. 민간 정신병원 자. 민간 이동보호소 차. 민간 요양원 카. 민간 정신요양원 타. 민간 조산원 파. 민간 혈액은행 하. 민간 투석센터 거. 민간 호스피스 너. 민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⁶ 그러한 모든 조치는 부속서 I의 유보항목 9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더. 보건부장관이 명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민간 보건의료 시설, 서비스 또는 보건 관련 서비스
기준조치	<p>:</p> <p>1971년 의료법 [법 제50호]</p> <p>2017년 의료규정 [P.U. (A) 제188/2017호]</p> <p>2018년 치의료법 [법 제804호]</p> <p>2021년 치의료규정 [P.U.(A) 제443/2021호]</p> <p>1998년 민간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법 [법 제586호]</p> <p>2006년 민간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민간 병원 및 그 밖의 민간 보건의료시설)규정 [P.U.(A) 제138/2006호]</p> <p>2006년 민간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민간 의료 진료소 또는 민간 치의료 진료소)규정 [P.U. (A) 제137/2006호]</p> <p>2016년 연합 보건전문직법 [법 제774호]</p> <p>1950년 간호사법 [법 제14호]</p> <p>1985년 간호사등록규정 [P.U. (A) 제494/85호]</p> <p>1966년 조산사법 [법 제436호]</p> <p>1990년 조산사규정 [P.U. (A) 제181/90호]</p> <p>행정 지침</p>

20	분야	:	전통 및 보완 의학 서비스 ⁷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전통 및 보완 의학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2016년 전통 및 보완 의학법[법 제775호]</p> <p>행정 지침</p>

⁷ 그러한 모든 조치는 부속서 I의 유보항목 9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21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하이퍼마켓, 슈퍼스토어, 백화점, 전문점 및 편의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2020년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유통업 서비스 참여에 한관 지침</p> <p>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편의점에 관한 지침</p>

22	분야	:	가스 공급, 발전, 배전, 송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 서비스, 수도 서비스 및 하수도 서비스 관련 공공사업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가스 공급, 발전, 배전, 송전, 재생에너지,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 서비스, 태양 전지판, 수도 서비스 및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사업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06년 수도 서비스 산업법 [법 제655호] 1920년 수도법 [법 제418호] 주 수도 법률 1990년 전기공급법 [법 제447호] 1993년 가스공급법 [법 제501호] 2011년 재생에너지법 [법 제725호] 사라왁 전기 법령 [제50장] 1974년 환경품질법 [법 제127호] 2024년 전기공급법 2024년 재생에너지법 2023년 가스공급법 2024년 해양열에너지 전환법 2017-2030년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종합추진계획

23	분야	:	무장 호송 서비스 및 무장 경비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무장 호송 서비스 및 무장 경비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

24	분야	:	<u>교육 서비스</u>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유치원</p> <p>나. 말레이시아 국가 교과과정을 다루는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 서비스</p> <p>다. 종교 학교</p> <p>라. 원격 학습</p> <p>마. 교습 센터</p> <p>바. 군사훈련교육, 그리고</p> <p>사. 공공 고등교육기관, 간호 교육, 기술전문대학, 지역전문대학, 군사학 및 종교학을 다루는 고등교육 서비스</p>
	기존조치	:	—

25	분야	:	연구 서비스 ⁸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연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어떠한 조치도 법학, 언어학 및 언어의 연구 및 실험 서비스를 제외하고 농업, 생물 다양성, 식품, 농업 기반 산업, 수산업, 사회과학 및 인문학을 다루는 농업 과학 분야의 연구 및 실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 산업에서 허용된 외국인 소유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p>
	기존조치	:	-

⁸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38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26	분야	:	кури어 및 특급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는 우편 서비스 ⁹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 현지주재(제8.6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쿠리어 및 특급 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는 우편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2012년 우편서비스법 [법 제741호] 2015년 우편서비스(허가) 규정 비보편적 서비스 허가 신청을 위한 허가 지침

⁹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부속서의 유보항목 38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2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회사의 정관이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회사는 그 규정된 제한을 초과한 주식 ¹⁰ (초과 주식)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기준조치	:	2016년 회사법[법 제777호] 1991년 증권산업(중앙예탁원)법[법 제453호] 1996년 증권산업(중앙예탁원)(외국인 소유)규정[P.U.(A) 제513/96호]

¹⁰ 예를 들어 회사는 초과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특정 권리, 즉 배당금 지급을 여전히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국인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1996년 증권산업(중앙예탁원)(외국인 소유)규정[P.U.(A) 제513/9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거나 상장된 증권 그리고 지분 매입 또는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07년 자본시장 및 서비스법[법 제671호] 2016년 회사법[법 제777호] 2016년 말레이시아 인수합병법 2013년 금융 서비스법[법 제758호] 2013년 이슬람 금융 서비스법[법 제759호]

2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지정된 법인¹¹에 제한된 활동이 지정된 법인이 아닌 이들에게 개방되거나 그러한 지정된 법인이 더 이상 비상업적인 기반에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1975년 산업조정법 [법 제156호]</p> <p>정책 및 장관 성명</p> <p>행정 지침</p>

¹¹ 예시의 목적상, 지정된 법인의 예시는 패디베라스 나시오날 베르핫(베르나스) 와 쿠알리티 알람 센디리안 베르핫을 포함한다.

3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면허 또는 허가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부과된 조건, 수량 제한 및 면허 미발급을 포함할 수 있다.</p>
	기존조치	:	<p>정책 및 장관 성명</p> <p>1975년 산업조정법 [법 제156호]</p> <p>1974년 석유개발법 [법 제144호]</p> <p>행정 지침</p>

3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법정 기구¹²의 권리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p>정책 및 장관 성명</p> <p>행정 지침</p>

¹² 예시의 목적상, 법정 기구의 예시는 근로자공제기금(EPF)과 램바가 타봉 하지(Lembaga Tabung Haji)를 포함한다.

32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1.4조) 최혜국 대우(제11.5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투자</u> 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된다. 주 또는 주와 연계된 법인과의 합작투자가 요구될 수 있다.
	기준조치	:	1994년 광물개발법 [법 제525호] 1960년 광업 법령 토지 법령 제68장 주 광물 법 국가 광물 정책

33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11.4조)</p> <p>최혜국 대우(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투자</u></p> <p>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그 러한 조건과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된다.</p>
	기준조치	:	<p>1965년 국가토지법 [1965년 법 제56호]</p> <p>1958년 사라왁 토지법 [제81장]</p> <p>1950년 사바 토지 법령 [제68장]</p> <p>2022년 켈란탄 농업 개발법</p> <p>1976년 도농계획법 [법 제172호]</p> <p>1976년 식물검역법 [법 제167호]</p> <p>1985년 수산업법</p> <p>2011년 상품표시법</p> <p>1983년 식품법</p> <p>국가 농업 정책</p> <p>행정 지침</p> <p>세관 수출입 금지 명령</p>

34	분야	:	임업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11.4조)</p> <p>최혜국 대우(제11.5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투자</u></p> <p>비시민 및 외국 국민이 소유한 법인은 관련 주 당국의 승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관련 주 당국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에 적용 대상이 된다.</p> <p>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와 사바에서 목재 추출과 벌목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단, 사라왁의 경우 현지 참여와 현지 과반수 지배가 요구된다. 그러한 행위에 개방되는 산림지대는 그 자원이 지속해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벌목 허용량을 조건으로 한다.</p> <p>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와 사바에서 목재 추출과 벌목의 부수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단, 사라왁의 경우 허용된 최대 외국인 지분 소유는 30퍼센트이다.</p>
	기준조치	:	<p>1984년 국가임업법 [법 제313호]</p> <p>1968년 사바 산림법 [1968년 제2호]</p> <p>2015년 사라왁 산림 법령 [제71장]</p> <p>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혜택 공유법</p> <p>2008년 멸종위기종 국제무역법 [법 제686호]</p> <p>2010년 야생동물보전법 [법 제716호]</p> <p>주 임업법</p> <p>행정 지침</p>

3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p>2010년 전략적 무역법[법 제708호]</p> <p>2001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및 불법수익법[법 제613호]</p> <p>2005년 화학무기협약법[법 제641호]</p> <p>1960년 무기법[법 제206호]</p> <p>1957년 폭발물법[법 제207호]</p> <p>2007년 화학무기협약 규정 [PU(A) 제361/2007호]</p> <p>세관 수출입 금지 명령</p> <p>1959/63년 이민법[법 제155호]</p> <p>1968년 고용(제한)법(2017년 개정)[법 제796호]</p>

3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u></p> <p>말레이시아는 금융서비스 약속을 제외하고, GATS상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52, GATS/SC/52/Suppl.1, GATS/SC/52/Suppl.2 및 GATS/SC/52/Suppl.3)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p> <p>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per the commitments in Chapter 9(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이라고 기재한다.</p> <p>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의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p>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기준조치	:

37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전파 분배, 보편적 서비스와 번호 부여 및 전자적 주소 부여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1998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법 제588호]</p> <p>2000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허가)규정 [P.U. (A) 제129/2000 호]</p> <p>2000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전파)규정 [P.U. (A) 제128/2000 호]</p> <p>전파 계획</p> <p>번호 부여 및 전자적 주소 부여 계획(NEAP)</p>

3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발효일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거나 인정되었어야 하는 투자 및 서비스를 제외한 투자 및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말레이시아는 이 협정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발효일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투자 및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

3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이행요건(제11.10조)
	유보내용	:	<u>투자</u> 말레이시아는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과 연관하여 요건을 채택, 유지, 부과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시행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0	분야	:	신용 보고 서비스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p>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p> <p>시장접근(제8.5조)</p> <p>최혜국 대우(제8.4조 및 제11.5조)</p> <p>현지주재(제8.6조)</p> <p>이행요건(제11.10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p>
	유보내용	:	<p><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말레이시아는 신용 보고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준조치	:	<p>2009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 [법 제701호]</p> <p>2010년 신용보고기관법 [법 제710호]</p> <p>2014년 신용보고기관(등록) 규정 [P.U. (A) 제142/2014호]</p> <p>2014년 신용보고기관(위법행위 과태료부과) 규정 [P.U. (A) 제275/2014호]</p> <p>행정 지침</p>

41	분야	:	연안해상운송 및 정부 화물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11.4조) 최혜국 대우(제11.5조) 이행요건(제11.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1조)
	유보내용	:	<u>투자</u> 말레이시아는 연안해상운송 및 정부 화물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 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행정 지침

42	분야	:	주류 및 알코올 음료, 담배, 제조된 담배 대용물 및 전자담배, 유사한 기기 또는 장치, 그리고 전자담배, 유사한 기기 또는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및 액상을 포함하는 궐련 제품의 광고
	하위 분야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11.4조) 시장접근(제8.5조) 현지주재(제8.6조) 이행요건(제11.10조)
	유보내용	:	<u>국경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말레이시아는 주류 및 알코올 음료, 담배, 제조된 담배 대용물 및 전자담배, 유사한 기기 또는 장치, 그리고 전자담배, 유사한 기기 또는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 및 액상을 포함하는 궐련 제품의 광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2024년 공중 보건을 위한 흡연 제품의 통제법(법 제852호) 2022년 콘텐츠법 행정 지침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말레이시아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52, GATS/SC/52/SUPPL.1, GATS/SC/52/SUPPL.2 및 GATS/SC/52/SUPPL.3)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약속은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말레이시아 회계사 또는 말레이시아 회계법인과의 현지 등록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registered partnership with Malaysian accountants or Malaysian accounting firms and the aggregate foreign interests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세무 서비스 (CPC 8630)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말레이시아인 공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의 파트너십 또는 민간 유한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registered partnership or private limited company with Malaysian authorised tax agents or firms and the aggregate foreign interests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건축 서비스 (CPC 8671)	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p>“복수 전문직 간 동업(건축, 엔지니어링 또는 적산)의 경우, 본국에서 등록된 전문 직업인에 의한 합작투자에서 외국인 지분은 최대 30퍼센트까지임. 외국인 이사직은 허용되지 않음 [For multi-disciplinary practices (Architecture, Engineering, or Quantity Surveying), foreign equity up to a maximum of 30 per cent for joint ventures by professionals who are registered in the country of origin. Foreign directorship is not allowed].”</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도시계획 서비스 (CPC 8674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체계적이고 조율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토지 이용, 부지 선정, 통제 및 활용, 도로 체계 및 토지 용역에 관한 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에만 한정됨	<p>서비스 공급형태 3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수의료 서비스 (CPC 932)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승마장 또는 경마장의 마속(馬屬) 동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한정됨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share of foreign interest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1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골프장 및 테마파크의 심미적 조경을 위한 자문, 계획 및 설계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조경 서비스(CPC 86742**)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30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CPC 841)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 842)	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CPC 843)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84400)	
C. 연구개발 서비스	
문화과학, 사회학 및 심리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CPC 85201)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 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 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 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 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경제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 비스 (CPC 85202)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 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 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그 밖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CPC 85209)</p>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0**)</p> <p>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모든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적용 대상으로 함. 그리고 재료,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프로세스의 생산이나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이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일체의 체계적 또는 집중</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계약 연구개발회사 및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회사로서 현지에 설립된 연구개발회사에 한하며,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for con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 locally incorporated as a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적 연구로 정의되며 다음은 포함하지 않음.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equity shall not exceed 51 per cent)."
가. 제품 품질관리 또는 재료,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검사	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나.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연구	
다.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	
라. 효율 조사 또는 관리 연구, 그리고	
마. 시장 조사 또는 판매 촉진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상품 운송에 관련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102)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가구 및 그 밖의 가정용 기구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0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 acting as an agent).”

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
가. 광고 공간 또는 시간 판매 또는 리스 서비스 (CPC 8711)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나. 광고 기획, 제작 및 배치 서비스 (CPC 8712)</p> <p>다. 그 밖의 광고 서비스 (CPC 8719)</p>	<p>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49 per cent.).</p>
	<p><u>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u></p> <p>광고는 최소한 80퍼센트의 현지 콘텐츠를 가져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어야 함(An advertisement must have at least 80 per cent local content and be made in Malaysia)."</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건설의 경우를 제외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CPC 86601)</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Bumiputera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is at least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임원급 소개 서비스 (CPC 8720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p>다른 사람에 의한 고용을 위한 임원급 인력(고위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소개, 선정 및 추천으로 구성되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잠재적 고용주 또는 장래의 피고용인에 의하여 조달될 수 있음.</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Bumiputera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is at least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지표 밀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p>연안 3D 지진 현장 조사, 자원 탐사 및 개발 지원에서의 3D 지진 현장 조사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752**)</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3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지표조사 서비스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제공에 한한 건물 조사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753**)</p> <p>지표조사 서비스</p> <p>중재 또는 소송, 세금 감가상각, 계약 전 및 후 감사, 기술적 실사, 자원 분석 및 건설 능력 분석 제공에서의 적산(비용공학) 전문가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86753**)</p>	
<p>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CPC 8866**)</p> <p>의료, 정밀 및 광학 기기, 시계를 적용 대상으로 함</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Bumiputera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is at least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포장 서비스 (CPC 8760**) 포장재 상의 정보 인쇄만으로 구성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p>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1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컨벤션 센터 (CPC 87909**) (회의와 기타 유사 행사를 위한 기획, 조직운영, 마케팅을 포함하는 회의 및 전시 운영 서비스)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가.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30 per cent).</p> <p>나. 3,000좌석 이상의 컨벤션 센터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두와의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For Convention Centres with over 3,000 seating capacity, only through joint venture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35%).”</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p>쿠리어 서비스 (CPC 7512**)</p> <p>편지 및 엽서를 제외한 문서 및 소포 에 대한 쿠리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joint venture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유통 서비스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섬유, 의류 및 신발에 한함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부미뿌뜨라 지분 소유는 최소 51퍼센트임(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Bumiputera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is at least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1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자동차 판매 (CPC 611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판매 (CPC 6113)	“진입은 다음으로 제한됨.
모터사이클 및 스노우모빌 그리고 관련 부분품 및 부속품 판매 (CPC 6121)	<p>가. 지분 구조</p> <p>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The aggregate foreign equity shall not exceed 30 per cent, while local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must comprise 30 per cent Bumiputera equity.)</p>
자동차 연료의 소매 판매 (CPC 6130)	
의약품 및 의료상품과 화장품의 도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매 서비스 (CPC 6225)</p> <p>농업을 제외한 중간 생산물의 도매 서비스, 재활용 폐기물 및 부스러기 그리고 재료의 도매 서비스 (CPC 6227)</p>	<p>나. 최소 자본금 요건</p> <p>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Minimum foreign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 in respective business type of formats are as per Guidelines)."</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농업 원료 및 살아있는 동물의 도매 서비스 (CPC 6221)</p> <p>가정용 기구, 물품 및 장비의 도매 서비스 (CPC 6224)</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진입은 다음으로 제한됨.</p>
<p>기계류, 장비 및 공급품의 도매 서비스 (CPC 6228)</p>	<p>가. 지분 구조</p> <p>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현지 지분 소유는 30퍼센트의 부미뿌뜨라 지분으로 구성되어야 함(The aggregate foreign equity shall not exceed 51 per cent, while local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must comprise 30 per cent Bumiputera equity.)</p> <p>나. 최소 자본금 요건</p> <p>각 사업 유형의 구성에서 최소 외국인 자본금 투자 요건은 지침에 따름(Minimum foreign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 in respective business type of formats are as per Guidelines).</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Guidelines).”</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교육 서비스 정부 출연 또는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사립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 교육 서 비스 (CPC 924**) <p>정부 출연 또는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사립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그 밖의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90**)</p>	<p>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상업적 주제를 위한 요건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fo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presence)”</p> <p>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외국인 지분이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필요성 테스트를 거쳐야 함(Only through a joint-venture with foreign equity not exceeding 49 per cent and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a needs test if necessary).”</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 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환경 서비스	
폐기물 처리 서비스 처리 및 처분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 간 산업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 (CPC 9402**)	<p>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국가 고형폐기물관리 기술평가 위원회의 승인 및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부로부터 승인받은 면허를 통해서만 가능 함. 총 외국인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pproval of the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Technical Evaluation Committee and</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approved license from the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Department. The aggregate foreign equity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1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폐수 관리</p> <p>산업 오수의 제거, 처리 및 처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1**)</p>	<p>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폐기물 처리 서비스</p> <p>다음에 한정된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함.</p> <p>가. 통합 바이오매스 처리 시설 서비스, 그리고</p> <p>나. 서비스 제공자는 바이오매스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위한 고도의 특수 기술을 갖춰야 하며 모든 환경 안전</p>	<p>서비스 공급형태 1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제품은 에너지 목적의 신재료로 이용될 것임.</p> <p>(CPC 9402**)</p>	
<p>환경권 대기 보호</p> <p>이동오염원 배출 모니터링과 통제 시스템 또는 저감 프로그램의 시행을 포함하여 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용 사업장에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4** –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에 상응함)</p>	
<p>소음저감 서비스</p> <p>거주용, 상업용 및 산업용 사업장 내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소음 저감 및 스크린 설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않음.</p> <p>(CPC 9405**)</p> <p>오염 토양 정화 및 복구 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p> <p>민간 분야에 의하여 계약된 서비스에 한함. 연방, 주, 구 또는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외주된 공공 사업 기능은 포함하지 않음.</p> <p>(CPC 94060**)</p>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p>구급차 서비스</p> <p>(CPC 93192**)</p> <p>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차량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p>	<p>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3은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민간 병원 서비스</p> <p>(CPC 93110*)</p>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경제적 수요심사.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그리고 (Economic needs test; 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s shall not exceed 40 per cent; and)</p> <p>그 합작투자 회사는 최소한 100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운영해야 함(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operate a hospital with a minimum of 100 beds). ”</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p>호텔, 관광 리조트 및 레스토랑 서비스 상점을 포함한 호텔 또는 리조트의 운영 및 관리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그러한 자산의 소유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CPC 641**, 642**, 643**)</p>	<p>기존 약속은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됨으로 수정:</p> <p>“가. CPC 641, 642 및 643 하의 서비스업 진입은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Entry for service activities under CPC 641, 642, 643 is permitted 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30 per cent).</p> <p>나. 4성 및 5성 호텔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CPC 64110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For CPC 64110</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covering 4 & 5 star establishments, only through joint venture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35 %).”</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인바운드 여행에 한정된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CPC 7471**)</p>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회사이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Joint venture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the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 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51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p>놀이 공원 (CPC 96194**)</p> <p>(하나 또는 여러 테마에 기반하여 지어진 각종 놀이 시설과 놀이기구, 기계적 또는 하이테크 시뮬레이션 장비로 구성된 가족용 레크리에이 션 지역 및 놀이 센터. 제공되는 활 동은 엔터테인먼트와 어드벤처로 구성됨. 공원의 컨셉은 야외, 실외,</p>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Only through joint venture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35%).”</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또는 둘의 조합이 될 수 있음)	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그 밖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서비스 (CPC 96590**)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게임 서비스는 도박과 베팅을 포함하지 않음.	기존 약속을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3은 약속 안함. 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운송 서비스

A. 해상운송 서비스

국제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정부 화물 및 연안 해운 제외) • 여객 운송 (CPC 7211) • 화물 운송 (CPC 7212)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외국인 지분)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locally-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49 per cent (foreign equity))</p> <p>선박의 말레이시아 등록</p>
---	--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말레이시아에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To register a vessel in Malaysia,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주가 말레이시아 국민이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함(Owner of that vessel must be a Malaysian citizen or corporation incorporated in Malaysia). 2. 말레이시아인이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해야 함(Majority shareholding to be held by Malaysians). 3.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가 말레이시아인이어야 함. 그리고(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be Malaysians; and), 4. 주 사업장이 말레이시아여야 함(Principal place of business to be in Malaysia)."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국제해운을 위한 선원 포함 화물선 임대 (CPC 7213)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
국제해운을 위한 선원 미포함 화물선 임대 (나용선 계약) (CPC 83103**) (연안운송 및 근해무역을 제외한 선박 관련)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외국인 지분)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locally-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49 per cent (foreign equity)).”</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f.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	
<p>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CPC 74540**) (내수에서는 제외)</p>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외국인 지분)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locally-incorporated joint-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49 per cent (foreign equity))”</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와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운 대리업 서비스 (CPC 7454**)</p>	<p>서비스 공급형태 3을 다음의 제한으로 수정:</p> <p>“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합작투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 소유는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locally-incorporated joint-venture</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and aggregate foreign shareholding in the joint-venture corporation shall not exceed 49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p> <p>(이)는 정박 또는 접안 중인 외항선의 유지 및 보수와 현지 선박의 유지 및 보수에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됨</p>	<p>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약속 안함(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Unbound (due to the lack of technical feasibility)).”</p> <p>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지분 최대 49퍼센트까지 허용(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 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Foreign equity allowable up to maximum of 49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C. 항공 운송 서비스	
<p>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사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모든 마케팅 요소를 활용하여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p>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은 약속 안함.</p>

분야 / 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매하고 마케팅할 기회. 이 활동에는 항공 운송 서비스 가격 결정 또는 관련 조건은 포함되지 않음)	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항공사 일정표, 좌석 상황, 항공 운임 및 운임 규정과 같은 정보를 수록하고 예약 및 발권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휴항 중인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을 보수 및 유지하는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 대기선 정비는 포함하지 않음)	
H. 모든 형태의 운송 서비스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 선적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	<p>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3은 다음과 같이 제한됨:</p> <p>“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이시아인 개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양자 모두와의 현지 설립 합작투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지분 최대 49퍼센트까지 허용(Only through a representative office, regional office or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with Malaysian individuals or Malaysian controlled corporations or both. Foreign equity allowable up to maximum of 49 per cent).”</p> <p>서비스 공급형태 4는 제9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서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